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 7. 10.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 8. 21.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사유

- 2007년도 본 예산 성립 후 교육부의 확정교부금과 서울시 결산전입금 등 추가세입재원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받은 명예퇴직 등 지방교육채를 재원으로,
-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 사업과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특수교육지원, 교과서 무상지원, 영어교육내실화, 교육복지 분야 등에 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학교급식시설비와 시급한 교육환경개선 등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일부 증액 편성하여 이에 대한 심의를 받기 위함.

3.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가. 추경 규모

(단위 : 백만원)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가액 (A-B)	증감율 (%)	비고
6,012,077	5,472,014	540,063	9.9%	

나.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	비고
계	6,012,077	5,472,014	540,063 (9.9)	
국가 부담수입	3,325,924	3,188,141	137,783 (4.3)	· 보통교부금 3,241,435 · 특별교부금 45,083 · 국고지원금 39,406
일반회계 부담수입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2,285,365	1,984,837	300,528 (15.1)	· 법정전입금 2,162,473 · 비법정전입금 56,134 · 학교용지부담금 66,758
자체수입	272,427	226,227	46,200 (20.4)	· 재산수입 44,099 · 입학금/수업료 160,211 · 사용료/수수료 5,788 · 잡수입 39,592 · 이월금 22,737
지방교육채	119,940	68,052	51,888 (76.2)	· 명예퇴직수당(증액) 56,100
주민 부담수입금	8,421	4,757	3,664 (77.0)	· 국민체육진흥공단 628 · 서울문화재단 등 36 · 복권기금 3,000

(다음 페이지에 계속)

다. 세출 예산안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추가경정예산액 (A)		기정예산 액 (B)	비교 증감(△) (C=A-B)	주요 변동 내용
	금액	구성 (%)			
계	6,012,077	100	5,472,014	540,063	
인건비	3,233,161	53.8	3,152,348	80,813 (2.6%)	80,813 ▪ 인건비 - 교원 및 지방공무원 명퇴수당 18,664 - 명퇴 부담금 부족분 54,711 - 명퇴자 증가에 따른 보수감액 △18,599 - 명퇴수당 증가분 26,037
기관운영비	35,036	0.6	34,191	845 (2.5%)	▪ 기관운영비 845 - 본청 및 교육위 운영 60 - 지역교육청 운영 241 - 평생학습관, 도서관, 사업소 운영비 544
학교운영비	382,964	6.4	370,781	12,183 (3.3%)	
사학재정지원	823,618	13.7	791,351	32,267 (4.1%)	▪ 사학재정지원 32,267 - 재정결함 지원금 25,235 - 명퇴수당 증액 7,032
교육사업비	544,592	9.1	437,000	107,592 (24.6%)	▪ 교육사업비 107,592 - 정책방향 사업 69,963 - 역점과제 13,392 - 기타 사업 24,237
시설사업비	645,963	10.7	399,399	246,564 (61.7%)	▪ 시설사업비 246,564 - 학교신설 64,111 - 교실증축 1,200 - 학교기타시설 증축 25,530 - 교육환경개선 129,614 - 학교급식시설 9,564 - 행정기관시설 507 - 지원기관시설 16,038
지방채상환	328,193	5.5	268,394	59,799 (22.3%)	▪ 지방채상환 59,799 - 감채기금적립 19,799 - 자체부담 지방채 상환 40,000
예비비및기타	18,550	0.3	18,550	0 (0.0%)	

(다음 페이지에 계속)

4. 교육위원회 심사결과

-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총규모 6조 120억 7,780만원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 하지만, 세부내역에서 영어체험센터 프로그램 설치비 15억 1,560만원 및 시설관리사업소와 중앙평생학습관 시설비 21억원을 포함한 6개 사업 예산 총 58억 5,595만원이 감액되고, 양천고 강당 신축 설계비를 포함한 5개교의 학교 기타시설 증축비 10억 6,000만원 및 상암고 등 87개교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 예산 42억 5,400만원을 포함한 총 58억 5,595만원이 증액되었음.

<서울시교육위원회 심사·의결 내역>

□ 총규모

(단위 : 천원)

구분	2007 제1회추경예산액	교육위 심의 의결액	증감
세입	6,012,077,803	6,012,077,803	0
세출	6,012,077,803	6,012,077,803	0

□ 감액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2007.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의결액	비교증감	비 고
영어교육 내실화	6,160,222	4,644,622	△ 1,515,600	영어체험센터 프로그램 설치비
방과후 학교운영	15,495,765	14,982,530	△ 513,235	방과후 학교보육프로그램 신규설치
재무관리	22,142,781	21,945,666	△ 197,115	남부 세일중 토지매입
학교신설	222,250,794	221,110,794	△ 1,140,000	아현방송문화고 설계비
교육환경 개선	271,429,652	271,039,652	△ 390,000	서문여고 생활실환경개선, 창호
지원기관 시설	23,707,442	21,607,442	△ 2,100,000	시설관리사업소 중앙평생학습관
감액 합계	561,186,656	555,330,706	△ 5,855,950	

□ 감액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2007.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결액	비교증감	비고
영어교육 내실화	6,160,222	4,644,622	△ 1,515,600	영어체험센터 프로그램 설치비
방과후 학교운영	15,495,765	14,982,530	△ 513,235	방과후 학교보육프로그램 신규설치
재무관리	22,142,781	21,945,666	△ 197,115	남부 세일중 토지매입
학교신설	222,250,794	221,110,794	△ 1,140,000	아현방송문화고 설계비
교육환경 개선	271,429,652	271,039,652	△ 390,000	서문여고 생활실환경개선, 창호
지원기관 시설	23,707,442	21,607,442	△ 2,100,000	시설관리사업소 중앙평생학습관
감액 합계	561,186,656	555,330,706	△ 5,855,950	

□ 증액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2007.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의결액	비교증감	비고
전문계고교 내실화지원	14,266,850	14,296,850	30,000	방이중 기술실 리모델링
교단선진화	5,993,574	6,063,574	70,000	금옥초 프로젝트선 TV및PC구입
기관운영	33,251,330	33,397,280	145,950	지역교육청 노후 관용차량교체
학교기타 시설증축	68,458,555	69,518,555	1,060,000	양천고 강당신축 설계비 외 4교
지원기관시설	23,707,442	23,800,442	93,000	학생교육원 축령산 관리동 신축 설계비
교육환경개선	271,429,652	275,683,652	4,254,000	상암고 교육환경개선외 86교
행정기관시설	3,095,400	3,110,400	15,000	주차장 보수
학교급식시설	43,564,851	43,752,851	188,000	상암고 급식실 보수외 3개교
증액 합계	463,767,654	469,623,604	5,855,950	

5. 검토의견

□ 예산안 개요

-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예산 성립 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450억 8,300만원과 추가확정 보통교부금 889억 9,715만원, 서울시에서 전입된 2007년도 법정전입금 추가분 2,508억 3,600만원 및 자치단체에서 전입된 비법정전입금 496억 9,200만원, 자체수입 462억원, 지방교육채 518억 8,800만원, 그리고 주민부담수입 36억 6,4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 명퇴수당 등 인건비 808억 1,334만원, 기관운영비 8억 4,500만원, 학교운영비 121억 8,304만원, 사학재정지원 322억 6,659만원, 교육사업비 1,075억 9,200만원 및 시설사업 2,465억 6,4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 예산액 5조 4,720억 1,400만원 대비 5,400억 6,315만원(9.9%) 증액된 6조 120억 7,780만원 규모로 편성됨.
- 그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 ▶ 세입예산의 증가 규모는 총 5,400억 6,315만원(9.9%)으로 국가부담 수입 1,377억 8,300만원(4.3%), 자치단체 부담수입 3,005억 2,800만원(15.1%), 자체수입 462억(20.4%), 지방교육채 518억 8,800만원(76.2%)주민(기관 등) 부담 수입 및 기타지원금 36억 6,400만원(77.0%)이 증액 편성됨.
  - ▶ 세출예산은 인건비 808억 1,300만원(2.6%), 기관운영비 8억 4,500만원(2.5%), 학교운영비 121억 8,300만원(3.3%), 사학재정지원 322억 6,700만원(4.1%), 교육사업비 1,075억 9,200만원(24.6%), 시설사업비 2,465억 6,400만원(61.7%), 지방채상환 597억 9,900만원(22.3%) 등 총5,400억 6,300만원이 증액 편성됨.

□ 추경예산안의 주요특징

- 금번 추경에서는 목적지정 사업비 1,021억, 특별교부금·국고보조금에 대한 대응투자비 80억원, 경직성경비·필요경비 2,387억원, 지방채 상환 598억원 등을 제외하면 심사를 통하여 조정가능한 사업비는 1,314억원 정도에 불과함.
- 세입부문
  - 세입부문에서 국가부담수입은 보통교부금 889억 9,715만원, 특별교부금 450억 8,300만원, 국고보조금 37억 324만원이 증액되어 총 1,337억 8,315만원이 증액되었음.

- 서울특별시의 법정 전입금은 2006년도 담배소비세 정산분 157억 400만원, 시세정산분 1,125억 9,200만원, 지방교육세정산분 1,225억 4,000만원이 전입되어 총 2,508억 3,600만원이 전입되었음.
- 「서울특별시교육지원조례」에 의하여 화장실 개선, 책걸상, 칠판교체비 등 비법정 전입금 410억 7,745만원이 전입되었으나 서울특별시 경영기획실 소속 교육기획관에서 직접 교육청과 협조하여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배분까지 한 후에 교육비특별회계에 계수만 반영한 바, 교육관련 상임위원회인 우리 교육문화위원회에 사전 협의·보고 등을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된 사항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겠음.
-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은 관악·동작·구로·광진·서초·강남·노원·송파·강동·강북 등 10개구 86억 1,400만원인데 예산규모가 큰 것은 복합화사업과 관련된 것임.
- 지방교육채는 교원과 지방직공무원의 명예퇴직희망자가 예상보다 증가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받은 규모인 518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전액 국가 부담임.

○ 세출부분

- 인건비는 공립교원 명예퇴직자 884명의 명예퇴직수당 474억원과 퇴직수당부담금 54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급여 불용예상액 213억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808억 1,334만원이 증액되었음.
- 교육사업비는 본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거나 추가된 사업비로서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지원 20개 분야 270억 2,600만원, 교육복지 선진화 구현분야 18개 사업 341억 6,133만원, 방과 후 학교 운영 활성화 분야 등 역점과제 추진에 133억 9,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075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시설사업비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 224억 9,300만원과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70억 4,212만원을 포함하여 총 2,465억 6,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 중 학교신설에 641억 1,100만원을 비롯하여 중앙평생학습관 설립,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영어체험교육원 설립, 교원연수원 강북센터 설립, 시설관리사업소 이전 등 기관설치비로 160억 3,800만원, 교육환경개선 1,296억 1,400만원, 학교기타시설증축 255억 3,000만원, 학교급식시설 95억 6,400만원, 행정기관시설 및 지원기관시설에 16억 5,45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부분야별 검토

- 세입면에서는 세입재원 전액이 본 예산 성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전입금과 서울시로부터 전입된 법정전입금, 기초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및 기타지원금 등으로 구성되어 조정의 여지가 없음.
- 순세계잉여금(이월금)을 본 예산 세입에 500억원 편성하였는데 2006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이에 못미치게 됨은 2006년도 세입에 편성되어 집행된 지방채사업비 758억원(명퇴수당 318억원, 학교신설 부지매입비 1/2 440억원)에 대하여 당해연도 말에 발행하지 않고 2007년 회계의 과년도 수입으로 편성시켰기 때문임.
- 신도초 부지매각대금은 당시 은평뉴타운 지구내에 신설 예정인 초·중 부지매입과 연계하여 신도초 매각을 추진하였지만 협의과정이 원만하지 못하여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됨.
- 추경 세입 지방교육채 중 상립초 증액은 부지매입비 부족분 93억 1,500만원을 세입재원에 편성한 것이며, 강일중의 경우는 원래 2007년도 본 예산에 국고부담 지방채 세입으로 135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7년도 보통교부금

으로 지원 해 주는 것으로 확정되어 본예산에 편성된 지방교육채 세입예산을 삭감하여 편성함.

- 세출면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비 및 지방채 상환액 등 경직성 경비나 필요경비인 약 4,086억원은 조정할 여지가 없으나 교육환경개선비 또는 교육사업비로 계상된 1,314억원은 조정이 가능함.
- 예산의 편성·제출권은 집행부에 그 권한이 주어져 있고 심의·의결하여 확정하는 권한은 지방의회에 있는 바, 지방의회의 이 권한행사는 정책과 사업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에 대한 가장 확실한 의사표시임. 따라서 어떤 예산을 의회에서 전액 삭감하였다면 그 사업은 하지 말라는 의회의 의사표시임. 이와 관련하여 노조사무실 임대료, 비품비가 금번에 추경에 반영된 것은 타당하지 못한 것임.
- 지원기관시설 증액 예산편성 중 유아교육진흥원 설치(13억 8천만원) 및 중앙평생학습관 설치(10억 194만원)의 경우는 금회 추경안 제출이전 「서울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한 후 추진되어야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 학생교육원에 설치하고자 하는 「영어체험교육원」은 설치비로 금회 추경에 91억 8,800만원이 반영된 사업으로 그 설립목적은 학교교육계획과 연계한 초·중학생 합숙 영어전용시설 운영, 영어교사 장·단기 심화 합숙연수를 통한 영어수업 능력 신장, 지역거점 영어체험센터 및 단위학교 영어전용 교실 운영·지원의 중추적 역할 등으로 그 설립목적의 타당성 검토는 별도로 하더라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9조 제4호에 의거 가평교육원의 교육내용을 영어체험교육으로 전환 운영하는 것은 가하나, 별칭이 아닌 공식 명칭을 「서울영어체험교육원」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조례 개정이 필요함.
- 본 예산 성립 후 교육청 현안사업으로 반영된 주요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사업내역	추경 예산액	비고
시설비	영어체험교육원 시설	경기도 가평 학생교육원내 (시설비 및 체험실 설치비)	9,188	특교사업
학교운영비	초등학교 운영비 증액	공립초등학교 운영비 현실화	10,814	
일용잡급 퇴직금	비정규직 퇴직금 증액	비정규직 퇴직금 단위학교(기관) 지원	10,000	
토지매입	학교운동장 부지매입	남부 세일중 토지매입비	12,239	
계		/	42,241	

- 저소득층자녀 급식비의 경우 기정 예산에 전액 반영되었어야 하는 가장 시급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에 따라 모두 반영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되는 관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임 (2007년도 추경에 약75억원이 전액 반영된다면 2006년도보다 약 18억원 증액된 규모임).
- 맞춤형복지의 경우 금번 추경에 85억 300만원이 반영된 바, 이는 서울시교육특별회계 형편에 따라서 다른 사업과 똑 같이 본 예산에 20% 정도 감액하여 반영함으로써 이번에 추가로 반영하게 됨. 지급대상은 공·사립학교 교직원, 행정기관 공무원 전체가 대상임.
-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에 정책사업, 역점사업, 민원성 현안사업 등이 우선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역청간, 지역청내의 지역간, 학교간 형평을 유지하는 것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임. 또한 연차계획이나 가용예산 범위내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

위를 정할 때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과 의논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액요인이 있는 급여 불용예산액(213억), 사립학교 운영비 여유분(16억 6,399만원) 등을 감추경한 것은 바람직하나 보다 적극적으로 감액할 부분을 파악하여 예산이 긴요하게 요구되는 분야에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임.

□ 참고자료

- 서울시 비법정전입금 중 교육격차해소사업내역

사업명	학교수	지원내역	예산액	비고
화장실 개선	52	207동(공립23, 사립 29)	13,158	
책걸상교체	282	242,145조(공립 217, 사립 65)	18,368	
질관교체	110	3,341개(공립 27교, 사립 83교)	2,901	
방과후학교	221	중점학교 65교, 프로그램운영 156교 (공립143, 사립 78)	2,860	
계	665	/	37,287	

-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200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총칙 제6조  
회계연도 중에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되는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 목적지정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지정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교육위원회와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 서울특별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9조 (학생교육원 업무)

제 19 조 (업무)

학생교육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07. 1. 4).

1. 학생인성교육에 관한 사항
2.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3. 학생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4. 학생 교과체험학습에 관한사항
5. 학생수련을 위한 분원 및 야외교육장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